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소속기관 및 부서 :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

2.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8월 17일, 최태림 의원 외 12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8월 2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23년 8월 29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3.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박선하 의원

나. 제안이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응급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과 응급의료장비 설치 등 응급의료에 관한 재정지원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함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경상북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함.

다. 주요내용

-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 개발 및 추진, 국가 추진 정책에 대한 행·재정 효율성 확보 등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 도지사가 5년 단위로 경상북도 지방시대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도지사가 5년 단위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 도지사가 기회발전특구 신청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 도지사가 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등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 도지사가 경상북도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 도지사가 경상북도지방시대지원단을 두도록 규정함(안 제10조).
- 도지사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4.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조영진)

□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통합하여 제정된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3. 7. 10., 제정 2023. 6. 9.)의 시행에 따라,

- 기존 관련 조례인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2012. 5. 31.)와 「경상북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정 2020. 6. 4.)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경상북도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 본 제정조례안은 본칙 14조와 부칙 5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안 제2조는 조례의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한 것으로, 이는 상위법령인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지역균형발전’, ‘초광역권’, ‘기회발전특구’를 규정한 것입니다.
- 안 제3조는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 개발·추진, 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 제고, 기구·인력의 배치 및 예산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구체적인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이며, 안 제4조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경상북도 지방시대 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한 것입니다.

- 안 제5조는 도지사도 하여금 2개 이상의 시도가 상호협력하여 설정하는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이며,
- 안 제6조는 개인 및 법인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관할 행정구역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재정적 지원과 도세감면을 규정하고 있고,
- 안 제7조는 수도권에 있는 기업과 대학이 도내로 이전하거나 도내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경상북도지방시대위원회 설치 근거와 20명이내의 위원 구성 및 기능별 분야별 분과위원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 제10조는 경상북도지방시대지원단의 구성·운영을 규정하여 경상북도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을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 관련 기관과의 역할 조정 및 연계·협력추진, 기회발전특구와 지역혁신융합단지 입주한 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연속적인 지원체계를 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11조는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며,

- 안 12조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발굴·추진을 규정하여 도지사가 지방자치분권의 촉진과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포럼, 조사, 관련 기관·단체 육성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특히, 시군간 균형발전지표개발 및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규정한 것은, 산업도시와 농업, 어업, 산림에 기반한 경북의 특성을 반영하여 22개 시군 간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 제13조는 안 제12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지원을 규정한 것으로, 전문적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참여를 촉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부칙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본 조례의 시행과 제정에 따라 그동안 시행되어 오던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폐지에 따른 행·재정적인 경과조치를 규정하여, 본 조례의 제정에 따른 혼선과 공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종합의견

- 우리나라는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수도권 집중화’가 갈수록 심화하여 2000~2021년간 전국 대비 수도권 청년 취업자 비중은 50.8%에서 56.4%로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49.2%에서 43.6%로 감소하였고, 수도권 총부가가치

(GRDP) 비중은 48.8%에서 52.9%로 늘었고, 비수도권 총부가가치 비중은 51.2%에서 47.1%로 줄었으며,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4차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디지털 심화 관점에서도 2006년 대비 2019년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업체 수 증가율이 수도권은 디지털 심화 정도가 높은(High) 산업이 47.6%로 가장 높은 반면, 비수도권은 중간-낮은(M-low) 산업이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¹⁾, 종사자 수 증가율에서도 수도권에서는 디지털 심화 정도가 높은 산업이 72.1%로 가장 많았고, 비수도권에서는 중간-낮은 산업이 62.8%로 가장 높게 집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통계청 통계개발원, 'KOSTAT 통계플러스 2023년 봄호).

- 또한, 시도별 소멸위험지역 현황에서도 전국 228개 시·군 중 118개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경북은 20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소멸위험진입 10, 소멸고위험 10)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한국고용정보원, 지역산업과 고용 2023년 봄호, 통계로 본 지역고용).
- 이러한 결과는 갈수록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되고, 인공지능이 바탕이 되는 4차 산업 분야에서도 비수도권인 경상북도로서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1) 통계청은 수도권 집중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과 산업별 디지털 심화를 중심으로 산업구조 변화를 분석했다. ICT 유·무형 투자의 집약도, ICT 중간재·서비스 구매 집약도, 직원 당 로봇 재고, 총 고용대비 ICT 전문가 수 등으로 디지털 전환 정도를 따졌다. 이를 통해 △산업분류를 낮은(Low) 디지털 심화 산업 △중간-낮은(Medium-low) 디지털 심화 산업 △중간-높은(Medium-high) 디지털 심화 산업 △높은(High) 디지털 심화 산업으로 나눴다.

○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 경북만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도모함과 동시에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여건조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경북도내 시군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경상북도 차원에서의 체계적이고 경쟁력 있는 정책개발과 시행을 위한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2023년 7월 10일 시행되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근거하여 위임된 사항과 경상북도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